

영등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신현도 의원 대표발의】



2012. 6.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盧 相 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9호로 2012년 5월 30일 신현도 의원의 8인
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자치
회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7조제7항)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 자치회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제7항을 종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모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부칙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 부칙 안 제2조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1회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함.
-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사항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구 18개동 중 위촉일자가 같은 동은 11개동, 위촉일자가 다른 동은 7개동이며 현재 18개동 427명 중 4년 이상 연임 279명, 4년 이하 연임 148명으로 임기만료시 한꺼번에 많은 주민자치위원이 동시에 위·해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배부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과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람.

각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

2012. 5월 현재

동 명	위원수	위촉일 현황	재임기간
18	427	일 치 : 11개동 비일치 : 7개동	1년 9명, 2년 119명, 3년 16명, 3.5년 4명, 4년 125명, 5년 5명, 6년 37명, 7년 23명, 7.5년 1명, 8년 34명, 9년 8명, 10년 13명, 10.5년 1명, 11년 8명, 11.5년 1명, 12년 20명, 13년 3명 (4년이하 148명, 4년이상 279명)
영등포본동	21	2013.1.19*16명, 6.15*1명, 9.15*1명, 2014.1.15*1명, 4.15*2명	2년 11명, 4년 10명
영등포동	24	2012.12.28*24명	2년 3명, 3년 2명, 4년 19명
여의동	24	2013.3.15*13명, 6.6*2명, 6.25*5명, 7.16*2명, 8.26*2명	2년 7명, 4년 9명, 6년 3명, 10년 2명, 12년 3명
당산1동	24	2013.1.15*24명	1년 5명, 2년 5명, 4년 8명, 6년 6명
당산2동	21	2013.2.26*21명	2년 15명, 3년 3명, 4년 3명
도림동	23	2012.12.31*20명, 2013.12.29*2명 2014.4.11*1명	2년 3명, 3년 3명, 3.5년 4명, 4년13명
문래동	24	2012.12.24*24명	1년 1명, 2년 10명, 4년 13명
양평1동	24	2012.6.14*1명, 9.7*1명, 9.12*2명, 12.31*10명 2013.2.11*1명, 2.13*4명, 4.10*2명, 12.15*1명, 2014.4.13*2명	1년 1명, 2년 9명, 4년 3명, 6년 3명, 7.5년 1명, 8년 2명, 10.5년 1명, 11.5년 1명, 12년 3명,
양평2동	27	2012.12.31*27명	2년 14명, 3년 1명, 4년 4명, 6년 1명, 8년 7명
신길1동	26	2013.2.5*26명	2년 6명, 4년 5명, 5년 1명, 6년 3명, 7년 1명, 8년 1명, 10년 4명, 12년 5명
신길3동	22	2013.1.19*22명	2년 3명, 4년 5명, 6년 3명, 8년 8명, 9년 3명
신길4동	27	2012.8.31*1명, 2013.1.21*2명, 2.16*2명, 3.10*5명, 3.18*1명, 4.10*1명, 7.31*2명, 10.15*11명, 12.18*1명	2년 2명, 4년 9명, 6년 9명, 7년 5명, 8년 2명
신길5동	24	2012.6.7*4명, 7.5*1명, 2013.1.29*12명, 3.31*1명, 7.31*1명. 8.7*3명, 9.30*1명, 11.1*1명	2년 8명, 4년 6명, 6년 1명, 8년 1명, 10년 3명, 12년 5명
신길6동	24	2012.5.22*2명, 2013.7.4*20명, 9.6*1명, 11.30*1명	2년 4명, 3년 2명, 4년 3명, 5년 1명, 6년 2명, 7년 10명, 8년 2명,
신길7동	25	2012.12.31*25명	1년 2명, 2년 2명, 3년 1명, 4년 6명, 5년 1명, 7년 1명, 8년 2명, 9년 1명, 10년 3명, 11년 6명
대림1동	25	2012.12.31*25명	2년 6명, 4년 4명, 6년 6명, 7년 2명, 8년 2명, 9년 4명, 10년 1명
대림2동	17	2013.12.31*17명	2년 2명, 3년 4명, 5년 2명, 7년 1명, 8년 2명, 11년 2명, 12년 1명, 13년 3명
대림3동	25	2013.2.26*25명	2년 9명, 4년 5명, 7년 3명, 8년 5명, 12년 3명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개정 2011.10.1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